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自動車登録規則 [別紙第14号書式] <改正2018年12月19日> 自動車365 (www. car365. go. kr) からも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이전등록 신청서
移転登録申請書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裏面の注意事項を参考に記入し、申請人はグレー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앞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表面)
※ [] 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行日時	처리 기간 즉시 処理期間 即時
구 소유자 (양도인) 旧所有者 (譲渡人)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登録番号)	
신 소유자 (양수인) 新所有者 (譲受人)	사용 본거지(차고지) 使用本拠地 (車庫地)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登録番号)	
	사용 본거지(차고지) 使用本拠地 (車庫地)		
	전자우편 メールアドレス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携帯) 電話番号 (リコール通知時にメッセージ が送信されます。)	
자동차등록번호 自動車登録番号	주행거리 走行距離	신자동차등록번호 新しい自動車登録番号	
	km		
등록원인 登録理由	[]매매 []売買	[]증여 []贈与	[]촉탁 []嘱託
	[]상속 []相続	[]기타 []その他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12条第1項、「自動車登録令」第26条第1項及び「自動車登録規則」第33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성명
申請人 氏名
생년월일
生年月日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電子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が、裏面の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申請人が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の確認に同意しないか、又は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確認がとれない場合は、当該書類（法人登記簿謄本は除く）を申請人自ら提出してください。

신청인(대표자)
申請人(代表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申請人(代表者)の提出書類</p>	<p>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p> <p>1. 自動車譲渡証明書(売買の場合のみ) 1部</p> <p>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p> <p>2. 譲渡人の印鑑証明書、「本人署名事実確認等に関する法律」第2条第3号に基づく本人署名事実確認書又は同法第7条第5項に基づく電子本人署名事実確認書の発行証[売買による移転登録の場合のみ添付し、印鑑証明書の場合「印鑑証明法施行令」第13条第3項に基づき印鑑証明書の使用用途欄に自動車売却用であることと譲受人の氏名と住所(「自動車管理法」第53条に基づいて登録された自動車販売業者の場合は事業場の所在地)、住民登録番号(法人の場合は法人名、住所、法人登録番号)が記載された上で発行されたものである必要があり、本人署名事実確認書又は電子本人署名確認書の発行書の場合は、それぞれ不動産関連以外の用途欄又は用途欄に自動車売却用であることと譲受人の氏名と住所(「自動車管理法」第53条に基づいて登録された自動車販売業者の場合は事業場の所在地)、住民登録番号(法人の場合は法人名、住所、法人登録番号)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p> <p>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p> <p>イ. 「自動車管理法」第53条に基づいて登録された自動車販売業者が売却、又は斡旋した場合</p> <p>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p> <p>ロ. 「自動車管理法」第60条に基づく自動車競売所の開設者が競売を実施した場合で、競売取引を証明する書類(自動車登録番号、譲受人、落札価格、競売日等の記載が必要)の元本を提出した場合</p> <p>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p> <p>ハ. 譲渡人と譲受人が直接取引を行った場合で、譲渡人本人が登録機関で自動車の譲渡事実を確認する場合</p> <p>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p> <p>3. 贈与証書(贈与の場合のみ) 1部</p> <p>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p> <p>4. 売却決定通知書(「自動車管理法」第26条第3項に基づいて売却された場合のみ) 1部</p> <p>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p> <p>5. 確定判決謄本(判決による所有権の移転の場合のみ) 1部</p> <p>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p> <p>6. 代理人が申請する場合は、委任状及び委任した者の身分を確認できる身分証明書の写し(法人の場合は法人印鑑証明書を指し、当該法人が提出した使用印鑑届を登録機関が照合・確認できる場合は提出不要) 各1部</p>	<p>수수료 手数料</p> <p>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p> <p>1,000ウォン。</p> <p>但し、使用本拠地と異なる市・道に申請する場合は1,500ウォン。</p>
<p>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p> <p>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 確認事項</p>	<p>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1. 家族関係記録事項に関する証明書(相続の場合のみ該当。公証証書等相続事実を証明できる書類でも可)</p> <p>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2. 所有者が個人である場合、住民登録票抄本、運転免許証又は外国人登録事実証明(住民登録証又は運転免許証の写し、又はその他の使用本拠地が分かる書類でも可)</p>	

	<div>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div> <div>3. 非事業用自動車を登録する法人等の場合は、事業者登録証又は法人登記事項証明書（事業者登録証の写し、又はその他の使用本拠地が確認できる書類でも可）</div> <div>4. 자동차등록원부</div> <div>4. 自動車登録原簿</div>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地方税特例制限法」による取得税減免対象の該当有無	<div>[]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div> <div>[] 「障害者福祉法」に基づく障害者で、障害等級1級から3級までに該当する者</div>
	<div>[]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div> <div>[] 「国家有功者等の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国家有功者で、傷痍等級1級から7級までの判定を受けた者</div>
	<div>[]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div> <div>[] 「5・18民主有功者の礼遇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登録された5・18民主化運動の負傷者で、身体障害等級1級から14級までの判定を受けた者</div>
	<div>[]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div> <div>[] 「枯葉剤後遺疑症患者の支援及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枯葉剤後遺疑症患者で、軽度障害以上の障害等級判定を受けた者</div>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方税特例制限法」に基づき取得税の減免対象である場合、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유의 사항
留意事項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1. 登録された自動車販売業者を介して中古自動車を売買した場合は自動車販売業者が移転登録申請を代行します。但し、譲受人本人が移転登録を申請する場合はそ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自動車管理法」第12条第2項）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2. 譲受人が移転登録を申請しない場合は譲渡人が移転登録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自動車管理法」第12条第4項）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85조제1항)
3. 譲受人が移転登録期間（売買：買受した日から15日以内、贈与：贈与された日から20日以内、相続：相続開始日が属する月の末日から6カ月以内、その他：理由が生じた日から15日以内）内に移転登録を申請しなかった場合は、関連する規定に基づき反則金が科されます。（「自動車管理法」第81条第2号、第85条第1項）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携帯)電話番号と電子メール（Eメール）アドレスは、申請者の自動車管理（リコール等）に必要な事項を案内する等便宜を提供する目的で利用されますので、ご記入いただき、変更が生じた場合は管轄登録機関までにお知らせください。但し、ご本人が望まない場合は、記入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